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85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2013카기2787 소송허가사건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김지운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건진 담당변호사 박필서, 법무법인 을 담당변호사 변환봉

피고 : 장철

### 2. 총원의 범위

피고, 소외 주식회사 진메트릭스, 소외 유왕돈 등이 시세조종을 시작한 2010. 12. 30.부터 시세조종 종료일 다음 거래일인 2011. 3. 2.까지 주식회사 진메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정상주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자들

###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요지

#### (1)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

#### (2) 청구의 원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진메트릭스, 소외 유왕돈 등과 공모하여 2010. 12. 30.부터 2011. 2. 28.까지 주식회사 진메트릭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가장·통정매매 주문 등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위 회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된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총원)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위 총원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및 제179조 제1항).

###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성수

